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3.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9. 30. 서지영의원 등 13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10. 2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1차 전체회의(2024.11.19.)

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

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12.23.)

상정 · 축조심사

제43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2.26.)

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2026.3.10.)

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서지영 의원)

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

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.

그런데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라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있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외국대학의 우수인재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·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3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천우정)

「교육공무원법」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.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라 국·공립대학의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되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4조의 ‘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’ 대상이 되며, 사립대학 교원도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라 겸직이 금지됨.

또한, 공무원이 아니었던 자가 공무를 겸하게 되는 경우 인사혁신처 예규인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」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

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.

따라서, 법 개정으로 기존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교원을 겸직하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대학의 우수인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또한,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외국대학 교원이 속한 국가가 겸직을 금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겸직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는 아니고, 해당 국가가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허용에 관한 국가나 대학 간의 갈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고민정)

국내 학문 후속세대 임용 위축 및 겸직 시 국내대학 교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채용분야 및 절차, 겸직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 반영 폐기